GS리테일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GS리테일 경영진단실

■ 서문

GS리테일은『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를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고객중심, 혁신, 파트너쉽 의 공유가치를 통해 'Value No.1 GS리테일'을 달성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 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모두가 선망하는 Value No. 1 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총칙

1.목적

본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은 GS리테일(이하 "회사"라 함)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1) 임직원은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윤리규범, 실천지침 해설서(이하, 이를 합하여 "윤리규범" 이라고 함)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2)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시행한다.

(3) 회사와 거래하는 독립된 이해관계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한다

3. 윤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 윤리규범 실천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회사내에 "윤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며, CEO 및 경영진단실로 구성한다.

(2)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제반 실무 업무의 수행은 경영진단실이 담당한다

(3) 경영진단실은 회사의 윤리규범의 자율 준수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 교육 및 전파, 관리 체계를 수립 운영하며, 각 조직 내 자율 준수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경영진단실은 회사의 전 임직원, 이해관계자, 고객으로부터 회사의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일체 사안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 및 절차를 제도화 하여 운영한다

(5) 경영진단실은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이를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실천 지침 해설서 및 신고 절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한다

(6) 경영진단실은 임직원이 윤리규범 및 관련된 제반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권해석을 내린다.

(7) 경영진단실은 제보내용을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고 제보자의 신분 등 관련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제보와 관련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4. 임직원의 의무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2) 회사의 전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경영진단실에 신속히 보고 해야 한다.

(3) 회사의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리자 또는 경영진단실에 문의해야한다.

(4) 회사의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을 경우, 회사가 요청하는 일체의 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회사의 임직원은 연 1회 이상「정도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 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5. 관리자의 책무

(1) 회사의 관리자는 GS인으로서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구성원이 회사의 정책 및 업무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회사의 관리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 절차를 정립하고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원한다.

6. 위반에 대한 조치

회사의 임직원이 본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고객이 사업 기반이라는 신념 하에 고객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가치의 창조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2)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3. 가치의 제공

(1)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

(2)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

■ 실천지침(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의견 청취 및 성실한 제공

(1) 고객의 평가가 성공의 척도임을 인지하고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여, 경영에 반영한다.

(2)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2. 고객과의 계약 • 사후관리 이행 철저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3)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3. 고객정보와 이익 보호

(1)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제2장 공정한 경쟁

회사는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자유경쟁의 추구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 품질을 통하여 고객의신뢰를 확보한다.

(2)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법규의 준수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실천지침(공정한 경쟁)

1. 정당한 경쟁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2) 정당한 경쟁 우위 확보

-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 당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 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3) 부당한 담합 금지

-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동종업체 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2. 관련 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1)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2) 해외 뇌물 거래 방지법의 준수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제3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평등한 기회

(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2)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절차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모든 거래는 회사가 정한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 실천지침(공정한 거래)

1. 협력업체의 선정

(1)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협력업체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협력업체 선정 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2)『협력업체 선정 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방법을 포함하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3) 협력업체를 선정 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2. 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2)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3)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4)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5)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 협력업체의 승인을 얻는다.

(6) 회사의 잘못으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7)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지 않는다. 본 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① 서면 체결 의무
②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금지
③ 상품판매대금 지급 의무
④ 부당한 상품 수령 거부 및 수령 지체 금지
⑤ 부당한 상품 반품 금지
⑥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금지
⑦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⑧ 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⑨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⑩ 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 제공 금지
⑪ 보복조치의 금지
⑫ 벤더를 통한 거래 유도 금지
⑬ 부당한 협력사의 종업원 사용 금지
⑭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8)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3. 상호발전의 추구

(1)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상호 노력한다.

(2) 윤리경영에 대한 합의로서, 협력업체로부터 「정도 거래 서약서」를 제출 받아 관리한다.

4. 협력업체의 지원 육성

(1)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2) 협력업체 육성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 협력업체의 자격을 명시하고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3)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 한다.

■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1) 임직원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4) 동료 및 관계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실천지침(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1) 전 임직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2)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 한다.

(4) 언론 또는 SNS 등을 통해 회사 및 회사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경쟁회사, 계열회사 등)과 관련하여 그 명예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충실한 직무수행

(1)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 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수행 시 충실히 준수한다.

(2)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시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 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3. 회사 재산의 보호

(1)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3) 회사의 기밀 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1)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 해서는 안된다.

6. 공정한 직무수행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 한다.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품, 향응, 금전대차, 미래보장, 기타 편의 등)

②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자산취득,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참여

③ 회사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④ 불량한 직무수행

⑤ 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

⑥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⑦ 성희롱

⑧ 직장내 괴롭힘

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인간존중

(1) 회사는 사람에 대한 상호 대등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창의성의 촉진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든다. .

■ 실천지침(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인재육성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 되도 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지원한다

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한다. .

3. 건강과 안전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4. 개인의사 존중

(1)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 전개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주주이익의 보호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4. 환경의 보호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한다

■ 실천지침(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2. 주주의 권리 및 이익보호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히 공시한다.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3.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

(1) 학벌, 성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3) 사회 각 계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5. 환경의 보호

환경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되는 사업 활동을 한다.

■ 부칙

본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은
2021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